

목차

- 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목적
- Ⅱ. 공정거래법 개관
- Ⅲ. 공정거래법 세부 내용
- Ⅳ.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
- V.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집행









🥏 공정거래법의 개념

01 정식명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91호)

02 공정거래법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

- ☑ 독점규제법
- ☑ 공정거래법
- ☑ 경쟁법
- ☑ 경제법





1980년 12월 31일 공포, 1981년 4월 1일 시행

-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 1890), EU기능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 등을 참고하여 도입
- 제정 당시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집중
- ※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규제가 추가되는 등 현재의 공정거래법 틀 마련



🥏 공정거래법의 연혁

연도	주요 개정 내용
199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기관이 됨
1994년	과징금 제도의 대폭 확대, 강화
1996년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2002년	30대 기업집단의 일괄정지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 제한 대상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 개정
2009년	출자총액제도 폐지
2013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규정 등 신설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2021. 12. 30.자 시행)



🤌 공정거래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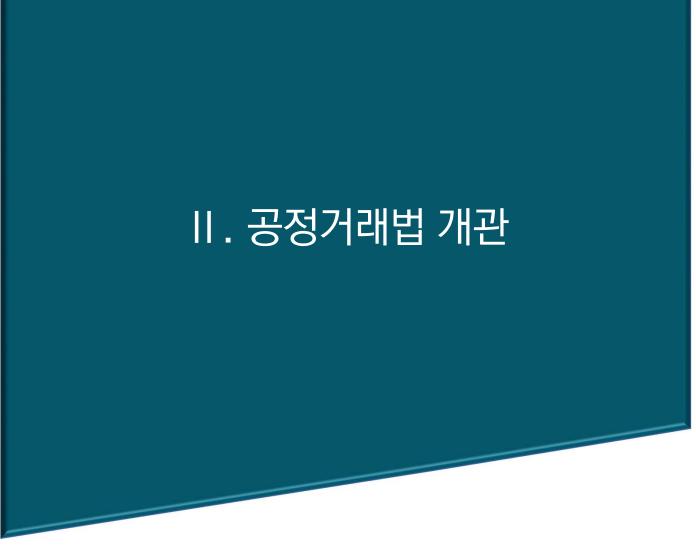


공정거래법 제1조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함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공정거래법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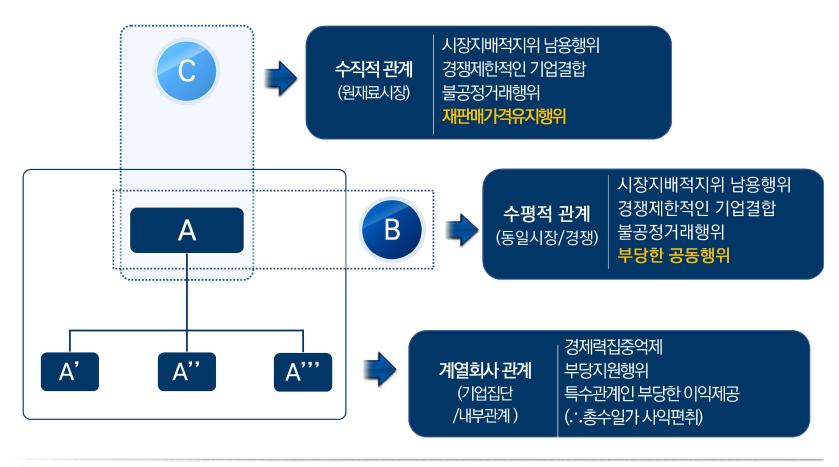
🦻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Ⅱ. 공정거래법 개관

🥏 공정거래법의 체계





Ⅱ. 공정거래법 개관

🦻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 및 범위

인적 범위 : 사업자

- 공정거래법의 수범자이자 위반행위의 주체
-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 자기의 계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주체는 사업의 종류, 조직형태,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

기리적 범위: 역외적용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당연히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공정거래법 제3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01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평가 요소

■ 시장 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구매자의 Buying power, 장기간 초과 수익 향유 여부 등

03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공정거래법 제6조

- 1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 단,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F-FRE

13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각호)

●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각호)
- 0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각호)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

부당성

- (1) 객관적 요건으로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와
 (2) 주관적 요건으로서 독점을 유지·강화하려는 목적이 필요
-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요건이 사실상
 추정 (2002두8626 판결)
 - ✓ 비교: 농협중앙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2007두22078 판결)



Ⅲ-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례

P사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사건 (2001년)



- P사는 열연코일과, 이를 이용하여 만드는 냉연강판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열연코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 냉연강판 시장에 신규 사업자인 H사가 진입하여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제조하자,
 P사는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
- 공정위: P사의 공급거절 행위를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필수요소 사용/접근 거절)로 제재
-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 대법원 : P사의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 P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인정되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고 판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개관

01 개념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불공정한 방법을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려는 목적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단독행위(unilateral conduct) 해당
- 관련 시장의 경쟁 저해를 금지하는 유형과
 개별 거래에서의 불공정성을 금지하는 유형으로 크게 분류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개관

02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자를 매개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회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실적 (단위 : 건)

2021년 기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11.8%, 불공정거래행위의 33.9%를 차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	586	761	564	564	534
불공정거래행위	205	254	214	191	186
거래상 지위 남용	89	104	94	71	63
부당고객유인	35	28	24	19	31
부당지원	11	16	18	21	31
사업활동방해	8	11	11	20	15
거래거절	21	22	16	18	11
구속조건부거래	13	9	7	6	5



-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주요 내용
- 1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 ✓ 개별 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간 상대적인 지위 차이를 기준으로 한 개별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 2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및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 고객유인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주요 내용
- 3 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04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 ○5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H사의 거래거절 사건 (2022년)



- H사는 수질 측정기기를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임
- H사는 지자체 발주 용역입찰 관련,
 지자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에게 확약서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1순위 낙찰자가 확약서 제공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
- → 이로 인하여 1순위 낙찰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낙찰자 지위를 박탈당함
- 공정위: H사의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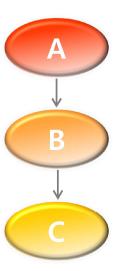
III-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개관

01 개념

공정거래법 제46조

■ 사업자가 상품/용역 거래 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III-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개관

02 성격

- 가격에 대한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의 대표적인 유형
- 자신의 가격이 아닌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상대방의 거래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
 - ✓ 권장 소비자가격
 - ✓ 매매 vs 위탁매매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 브랜드간 경쟁 vs 브랜드내 경쟁



🤰 기업결합 관련 사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 속도 낼까

이르면 내달 美·英 승인 전망...EU 문턱 넘을까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밝힌 이후 약 2년 동안 양사 해외 기업 결합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11월에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항공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할 경우,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기업 결합 심사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불승인한 EU의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이 높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2022.01.12. 네이버뉴스

(영상)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거부 가닥...여파는?

1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이 승인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발표할 것...



● 한국경제TV PiCK 2022.01.13. 네이버뉴스

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 불허...인수합병 무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현대증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

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 불... 파이낸셜뉴스 PICK | 2022.01.13. | 네이버뉴스 [2보] 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 불하..."LNG선 독점" 브릿지경제 | 2022.01.13.







🦻 기업결합의 제한 개관

01 취지

- 인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현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공동의 회사 설립(Joint Venture)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제 가능

02 유형

공정거래법 제14조

- 기업결합 불허
- 구조적 시정조치
- 행태적 시정조치



🦻 기업결합신고 제도 : 신고대상

공정거래법 제**11**조

-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
 - ✓ 당사회사 중 1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 발생
 - ✓ 당사회사 중 외국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상기 요건 이외에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 의무 발생

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항

■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매출액 및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도, 거래 대가 및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 수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업결합신고 제도 : 사전신고 등

공정거래법 제**11**조 제**6**항

- 당사회사 중 일방이 소위 "대규모회사"일 경우, 기업결합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함
 - ✓ 계열회사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일 때 대규모회사에 해당
- ❖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을까?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입이 불가능할까?







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 시장집중도가 1차적인 기준임 HHI test
-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 거래당사자들간 관계에 따라 수평적 기업결합, 수직적 기업결합, 혼합결합으로 거래 유형을 분류
-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수평형 기업결합), 수직적 봉쇄효과(수직적 기업결합), 포 트폴리오 효과(혼합결합)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



III-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개관

01 취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들이 합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의 경쟁구도를 왜곡할 경우 독점 이윤이 발생하고
 시장에 비효율이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카르텔)로 금지



III-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개관

02 유형

- 가격결정행위
- 거래조건결정행위
-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량 제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 설비 제한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행위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 수행·관리 또는 이를 위한 회사 등 설립 행위
-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 결정행위
- 기타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 제한행위 및 **정보교환 행위**



III-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개관

02 유형

- 가격결정행위
- 거래조건결정행위
-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량 제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 설비 제한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행위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 수행·관리 또는 이를 위한 회사 등 설립 행위
-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 결정행위
- 기타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 제한행위 및 **정보교환 행위**

경성담합



35

III-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개관

02 유형

- 가격결정행위
- 거래조건결정행위
-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량 제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 설비 제한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행위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 수행·관리 또는 이를 위한 회사 등 설립 행위
-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 결정행위
- 기타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 제한행위 및 **정보교환 행위**

연성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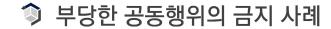


Ⅲ-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개관
 - 03 요건
 - 복수의 사업자
 - 합의
 - 부당성
 - 04 정보교환과 합의
 - 과거에는 정보교환 자체가 담합에는 해당하지 않고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2020년) 시 정보교환 합의 자체가 담합의 유형으로 추가됨



III-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G사 및 D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년)



- 다국적 제약사인 G사는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을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
 이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항구토제를 제조 및 판매하였음
- D사는 G사의 신규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다른 방법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
 G사의 항구토제의 복제약을 제조 및 판매하였음
- G사는 D사에 대해 항구토제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화해로 종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1) G사 항구토제의 국내 공동판매권 D사에 부여
 - 2) G사 신약의 국내 독점판매권 및 인센티브 제공
 - 3) D사의 항구토제 복제약 생산/판매 중단
 - 4) 항구토제 및 G사 신약의 복제약 개발 및 약리유효성분을 달리하는 새로운 경쟁제품 개발·생산·판매 포기
- 공정위는 G사와 D사의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G사 신약에 관련된 부분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구토제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III-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개관

01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

■ 둘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

0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취지

 사업자단체가 직접 경쟁제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

0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 수 제한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교사 또는 방조



38



III-7. 경제력집중 억제

🥏 경제력집중 억제 개관

01 취지

-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86. 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

02 유형

-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상호출자금지
- 채무보증제한
- 지주회사제도
-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III-7. 경제력집중 억제

- 🤌 경제력집중 억제 유형
-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 공시대상 기업집단 (그룹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그룹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에 대규모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를 공표함
 - 자산 규모가 3~4조원 수준인 그룹부터 공정위의 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함
- 02 상호출자금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간 주식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함
- 03 채무보증제한 제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금지함



III-7. 경제력집중 억제

- ♦ 경제력집중 억제 유형
- 04 지주회사 제도
 - 지주회사: 주식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려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화할 수 있는 장점
 - 과조한 지배력 확장의 위험 → 출자단계 및 지분율 등을 제한
- 05 공정거래 공시 제도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III-8.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개관

01 정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부당하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지원객체(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 지원객체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소위 "통행세")

02 성립요건

- 지원행위성 "정상가격"
-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또는 경제력 집중 야기 등



42

43

III-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개관

01 정의

공정거래법 제47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총수가 자연인인 경우로 한정) 소속 국내회사는 다음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 ✓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
- ✓ 동일인 및 그 친족이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 위 국내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 지분을 가진 국내 계열회사

02 금지 행위 유형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Ⅳ-1. 법령상 정당한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

→ 법령상 정당한 행위

01 정의

공정거래법 제116조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됨
- ✓ 다른 법이 해석상 상호 충돌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

02 성립요건

-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 "정당한"행위
- ✓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하여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 (판례의 입장)



46

Ⅳ-2. 무체재산권의 행사 /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

🦈 무체재산권의 행사 및 일정한 조합의 행위

01 규정

공정거래법 제117조

■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됨

02 성립요건

-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
- "정당한"행사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됨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
- ✓ 소규모 사업자·소비자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 보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V.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집행





Ⅴ-1. 행정 제재

01 시정조치

-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할 수 있음
- 기업결합심사시 조건부 승인

02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부과 가능

03 동의의결 (공정거래법 제89조)



Ⅴ-2. 형사 제재

- **01** 전속고발제는 현재까지는 존치
 -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

○2 형법상 입찰방해죄

03 최근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주의 필요



V-3. 민사적 집행

○1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법 제109조)

■ 행정적 집행 마무리된 후 후속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2 금지청구 (공정거래법 제108조)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규정 제외)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한해서 도입





감사합니다

